

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운용 가이드라인

1 - 7 - 4

#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운용 가이드라인

## 제 1 장 총 칙

### 제1조 (목 적)

이 실천사항은 (주)빙그레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,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하도급법”이라 함)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# 제 2 장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·운용 실천사항

### 제2조 (기본원칙)

이 실천사항은 (주)빙그레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설치·운용하는 내부 심의위원회의 자율성, 적절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(주)빙그레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·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.

### 제3조 (내부 심의위원회 선정·운용 가이드라인)

- 가. 내부 심의위원회 위원은 (주)빙그레가 회사 내부에 하도급거래를 담당하는 부서 및 준법경영팀 등 유관부서장 중에서 임명하여 선정한다. 단, 위원 중 일부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임명하여 선정할 수 있다.
- 나.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거나, 위원들이 별도로 협의하여 위원 내/외부 인원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.
- 다. 내부 심의위원회는 1항 및 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장 및 위원을 중심으로 별도 위원회 조직으로서 설치되어 운용되며, 위원회에서는 심의 진행을 위해 실무진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.

### 제4조 (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의 실효성)

- ① 내부 심의위원회는 월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- ② 내부 심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직전사업년도 하도급거래금액에 대한 수급사업자별 당해사업년도 개별 하도급거래계약(예상)금액이 10%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과정의 공정성,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 아래 심의사항을 바탕으로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.

<하도급법 관련 사전 심의사항>

- 가.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
- 나. 부당 발주취소 및 반품금지 위반여부
- 다. 하도급대금지급의무 준수여부
- 라.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
- 마.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

바.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

- ③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등록·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.
- ④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하여야 한다.
- ⑤ 내부심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관련 분쟁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.
- ⑥ 내부심의위원회는 기타 하도급 거래 관련 위원회에서 선정한 심의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.
- ⑦ 내부 심의위원회는 필요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 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.
- ⑧ 내부 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,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(예시. 인사상 불이익 등)를 취하여야 한다.
- ⑨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

### 제5조 (실천사항 도입·운용여부 판단기준)

빙그레의 실천사항 도입·운용여부 판단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다음 각호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도입·운용한 것으로 본다.

- 가.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·운용 관련기준을 마련(사규, 업무지침 등)하였을 것
- 나.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·운용기준을 공개(홈페이지 등)하였을 것
- 다. 내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을 것
- 라. 내부 심의위원회 심의실적(실천사항 내용 심의 등)이 있을 것

### 제6조 (실천사항의 실효성)

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·운용을 위한 실천사항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본 실천사항의 도입 및 준수 근거를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에 마련하여 둔다.

본 실천사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  
본 실천사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 
본 실천사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 
본 실천사항은 2023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